

해외 법제 최신 동향

제 목 : 美 해외정보감시법 시한 연장 개정안 통과

1 개요

- '18. 1. 19. 미 상원은 미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, 통화기록 등 통신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(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, 1978년 제정) 6년의 시행기간 연장법안을 승인,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동 법안에 서명함
- * 해외정보감시법 : 1978년에 제정되어 국가안전보장 사건에 대한 해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전자감시 및 물리적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(50 U.S.C. Chapter 36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)

2 주요 특징

- 동법은 미 법무부장관(검찰총장)과 미 국가안보국(National Security Agency)에게 영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또는 영장 없이 감청, 통신 정보를 수집권한을 부여함
- 동 법 제702조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영장 없이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(테러, 무기거래, 중요 외국첩보 등) 외국인이 국외에서 영역내 연결망(페이스북, 버라이즌, 구글 등)으로 교신하는 이메일, 통화, 메시지 등을 조사 가능
- 이 과정에서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정보수집대상자(일명 타겟)와 통신을 주고받을 때 미국 자국인의 통신기록도 수집되고 관련 법집행기관은 영장 없이 기록과 내용을 수색할 수 있음
- 한편, 동 법은 미국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첩보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
- 이번 연장법안은 단순히 6년의 기간연장만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,

- 검색 대상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기존에 실시하던 정보 수집대상자(일명 타겟)의 직접 교신내용이외에도 타겟이 발송하는 내용 중에 미 국가안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 예방적으로 영장 없이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☑